#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67

발의연월일: 2024. 11. 21.

발 의 자:김종양・서천호・조은희

김상훈 • 이성권 • 김상욱

이달희 • 고동진 • 한기호

조승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옥외집회" 부분과 시위의 금지시간인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부분에 대하여 국민의 집회 및시위의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등 결정을 하고, 입법자에게 위헌성을 제거한 개선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2008헌가25, 2010헌가2 등).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 제3호에서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과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하여서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촉구하였음(2018헌바48, 2021헌가1 등).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시한까지 현행법에 대한 개선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현행법 제10조 "옥외집회"

부분과 제11조제3호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부분은 법규적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개정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추가 로 예전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관저와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하고 예외적 옥외집회 허가를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토록 하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여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본연의 업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 법률 제 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를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도"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를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로, "헌법재판소장 공관"을 "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본연의 업무 활동 에 방해가 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 시간) -----오전 0시부터 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오전 6시까지에는-----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 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 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주민의 사생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활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 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회를 허용할 수 있다. 붙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 지에<u>도</u>----.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장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 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 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3.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官邸)-----헌법재

판소장 공관. 다만, 다음 각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

판소장 공관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4. • 5. (생략)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 장, 헌법재판소장 본연의업무 활동에 방해가 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 5. (현행과 같음)